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5. 17 선고 2019가합104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3. 3. 29 선고 2022나21919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5. 17 선고 2019가합10472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 변호사 정성희, 문정현, 김용일, 임혜원

피고1.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2. 유한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 변호사 오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새미, 박근부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4. E

5.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변론 종결 2022. 4. 19.

판결 선고 2022. 5. 1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C, E은 피고 유한회사 B, D과 연대하여 749,250,000원 및 그중 54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유한회사 B, D은 피고 유한회사 C, E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744,915,753원 및 그중 535,665,753원에 대하여 2021.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유한회사 B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전남 무안군 G 대 1977.3m²에 관하여 2017. 3. 24. 체결된 신탁계약을 744,915,75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 D,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D,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유한회사 B, D, F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유한회사 C, E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9,250,000원 및 그중 54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유한회사 B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전남 무안군 G 대 1977.3m²에 관하여 2017. 3. 24.1) 체결된 신탁계약을 749,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B(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H,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C(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I,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D은 2017. 1. 6.까지 피고 B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E은 2010. 3. 15.부터 2017. 9. 29.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D과 피고 E은 법률상 부부이다.

다. 원고는 2016. 9. 22. 피고 B,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보증인으로 피고 D, E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란에는 피고 B, C의 인감이, 보증인 란에는 피고 D, E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1. 피고 B

2. 피고 C

제1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차용합계금 600,000,000원을 대여한다. 편의상 계좌이체는 채권자의 부 J의 명의로 하기로 한다.

지급일시 2016. 9. 22. 현금 200,000,000원

2016. 9. 23. 계좌이체 200,000,000원

2016. 9. 28. 계좌이체 200,000,000원

제2조

차용금의 변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2016. 10. 23.부터 2017. 9. 23.까지 매월 23일에 5,000,000원씩 12회 6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2) 나머지 540,000,000원은 2017. 9. 23.까지 별도로 변제하기로 한다.

3) 채무자 피고 B 소유 전남 무안군 G 지상 신축상가에 대하여 분양 선택 시에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으로 10%를 지급 또는 별도 협의금액으로 정하기로 하고 중도금 대출이자(채무자들이 대납한다. 분양 선택 시에는 위 1)항의 매월 5,000,000원의 변제는 정지되며, 나머지 차용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 시점에 상계하여 지급처리한다.

제3조

위 차용금의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대표이사과 K이 보증인으로 입보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 B, D을 대리한 피고 E과 2016. 9. 22. 이 사건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501호로 공증을 받았다. 위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는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제5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제9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D, E의 지위가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피고 D과 M 사이에 2017. 2. 9. 피고 D이 보유한 피고 B 지분 중 90%를 M에게, 10%를 N에게 각 양도하되, M이 피고 B의 O조합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P교회에 대한 토지대금 잔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무렵 M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8. 4. 16. 사임하였다.

바. 피고 E은 2017. 9. 29. 자신이 보유한 피고 C 지분 중 74%를 Q에게, 26%를 R에게 각 양도하였다.

사. 피고 B은 2017. 3. 24.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와 피고 B 소유의 전남 무안군 G 대 19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W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10. 피고 F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F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 제9조에는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이미

피고 C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 C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액의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F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7. 4. 10.경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이미 도과하였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4. 24.부터 2019. 2. 23.까지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매월 5,000,000원씩을 지급받고 있었고,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기로 한 상가건물을 분양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 B의 변제자력이나 재산처분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B의 변제자력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이 원고에게 알려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 4. 10.경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9. 22. 피고 B, C에 500,000,000원을 1년간 이자 10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면서, 2016. 10. 23.부터 2017. 9. 23.까지는 매월 5,0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7. 9. 23.에는 나머지 원리금 54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받되, 피고 B, C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D, E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21. 10. 23. 기준 잔존 대여원리금은 749,250,000원(= 2017. 9. 23. 변제해야 할 원리금 540,000,000원 + 위 540,000,000원에 대한 2017. 9. 24. 이후의 지연손해금 209,2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49,250,000원 및 그중 540,000,000원에 대한 2021. 10.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B, C, D, E의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피고 E이 임의로 피고 B, D의 인감을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E은 관련 형사사건(Q, R이 피고 E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 이하 같다)에서 수사기관에 '피고 B은 피고 D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B, C을 함께 채무자로 기재한 것이다', '피고 D은 명의만 피고 B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모든 행위는 제가 했다. 피고 D은 회사에 온 적도 없고, 회사 일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 E은 이 사건 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B, D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D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 E이 본인 또는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④ 피고 D이 피고 B의 대표자로서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사업상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이 피고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위 인감과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D은 남편인 피고 E에게 자신의 명의를 피고 B의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B, D은 위 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피고 E이 피고 B, D을 대리하여 작성한 이 사건 공정증서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피고 B의 실질적인 대표자였고, 피고 D을 대행·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B,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서에는 대여금 중 일부를 원고의 아버지인 J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J와 X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16. 9. 23. 및 2016. 9. 28. 합계 159,000,000원이 피고 B에 지급된 점, ② 피고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실제 채무액은 500,000,000원이지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원고가 원하는 대로 차용금액을 600,000,000원으로 써 주었고, 이자도 150,000,000원 가량 지급했다',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 B 명의로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대여금 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에서 대여금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온전히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500,000,000원이 피고 B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피고 B, C, D, E으로서는 그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의 폐기를 요구하거나, 실제로 지급된 금액만을 대여금으로 인정한다는 서면 등을 원고로부터 작성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소송 전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 C에 실제로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자로 1년간 100,000,000원을 지급받되, 2016. 10. 23.부터 2017. 9. 23.까지 매월 5,000,000원씩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7. 9. 23. 나머지 원리금 540,000,000원을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 B, C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통틀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 D, E은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 중 2016. 10. 23.부터 2017. 9. 23.까지의 이자 합계액 60,0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원리금 749,250,000원(= 2017. 9. 23. 변제해야 할 원리금 540,000,000원 + 위 540,000,000원에 대한 2017. 9. 24.부터 2021.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209,250,000원) 및 그중 540,000,000원에 대한 2021. 10.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여금채무 중 1/2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 피고 B, D은 이 사건 약정서의 채무자란에 '연대채무'의 표시가 없고, 보증인 란에도 '연대보증'의 표시가 없으므로, 분할채무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중 1/2에 대해서만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살피건대, 피고 B, C이 상인에 해당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 D은 이 사건 약정서에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피고 D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 B,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부 변제 주장 피고 B, D은 피고 E이 2017. 9. 23. 이후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85,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이 2017. 9. 26.부터 2019. 2. 2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85,000,000원(= 5,000,000원 × 17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미치지 못하는 위 변제금을 원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우선하여 충당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위 변제금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어야 한다.

피고 E의 위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법정변제충당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계산표의 기재와 같고, 그 결과 2019. 2. 23.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원리금 535,665,753원과 지연손해금 33,370,348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 B, D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실제로는 피고 E의 개인채무인데, 피고 E이 피고 C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C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 약정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원고에게, 피고 C, E은 피고 B, D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원리금 749,250,000원²⁾ 및 그중 54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D은 피고 C, E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원리금 744,915,753원³⁾ 및 그중 2017. 9. 23. 발생하였던 원리금의 잔액 535,665,753원에 대하여 2021.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들만을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F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앞서 산정한 대여원리금 749,2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 1)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중 일부의 사람만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73014 판결 참조).
-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 3)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다. 판단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F 역시 피고 B, D과 마찬가지로 피고 E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중 8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변제충당 후 2021. 10. 23. 기준으로 2017. 9. 23. 발생하였던 원리금의 잔액 535,665,753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2021.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209,250,000원 합계 744,915,753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전주시의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 O조합의 각 사실조회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O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과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는 각각 2,500,000,000원과 260,000,000원이었던 점, ③ 피고 B이 금융자산 등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들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F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F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F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감정인 Y의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10. 25.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4,120,693,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O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무액 2,500,000,000원과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인 2017. 4. 10.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공동담보가액은 1,360,693,200원(= 감정평가액 4,120,693,2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500,000,0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6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744,915,753원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744,915,75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곽상호

판사한상원

판사김달하

별지

2021. 10. 23.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 209,250,000원의 합산액이다.

3) 변제충당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2021. 10. 23.까지의 대여원리금을 계산하면

783,008,886원(= 2017. 9. 23. 발생하였던 원리금의 잔액 535,665,753원 + 2019. 2. 23. 기준
지연손해금 33,370,348원 + 위 원리금의 잔액에 대한 2019. 2. 24.부터 2021.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 213,972,785원)이 되는데, 원고가 2017. 9. 24.부터 2021. 10. 23.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209,250,00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2021. 10. 23. 기준 잔존 대여원리금은
744,915,753원(= 535,665,753원 + 209,250,000원)이 된다.